

	학생징계규정	제 정 일	2026. 9. 1.
		개 정 일	
		개정차수	차
		담당부서	학생서비스과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학칙 제44조 제3항에 따라 학생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징계사유) 학생이 재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2. 시험 부정행위를 하거나, 수업 또는 시험을 방해한 경우
3. 폭력(언어적 폭력을 포함한다)을 행사한 경우
4.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되어 인권센터장이 징계를 요청한 경우
5.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6. 그 밖에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학생으로서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제 3조 (징계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하며, 그 기간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신은 3일 이상 7일 이내로 하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해당 기간 동안 수업 이외의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2. 유기정학은 7일 이상 30일 이내로 하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해당 기간 동안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3. 무기정학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학이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정학의 해제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없다.
4. 퇴학은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된다.

② 휴학 중인 학생이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의 처분을 받을 경우 복학한 날부터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학생이 징계 기간 중 휴학할 경우 휴학기간은 징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4조 (학생징계위원회) ①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으로 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서비스과장이 된다.

제 5조 (징계대상 혐의 조사 및 고지) ① 학생처장은 학생이 제2조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학생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학생처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학생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동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를 통보받거나 인지한 날로부터 징계대상 혐의의 조사 등 제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조 (피해자의 보호) 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처분이 이뤄지기 이전에도 피해의 지속과 확대를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징계혐의에 대한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위한 연락의 제한, 공간의 분리 등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임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에 대한 신고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혐의 조사 과정 중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7조 (청문 등) 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대상 학생(이하 ‘학생’ 이라한다.)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학생은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의 의견 진술을 위한 출석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출석 예정일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학생의 진술 없이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없는 경우
2. 학생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3.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진술권포기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이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징계 의결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의 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도교수와 학부(과)장 등 관계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진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내 관계자(학생처, 인권센터 등) 및 교외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참석시켜 관련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8조 (징계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학생처장이 징계의결요구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생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련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제3조 제1항의 4호의 처분은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조 (징계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학생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징계의결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과 사회통념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처분) 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에 대한 징계를 총장에게 제의하여야 한다.

1. 징계위원회 회의록
2. 징계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
3. 학부(과)장 의견서 및 경위서
4. 학생 진술서 등

② 총장은 징계를 제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징계의 효력이 발생된다.

③ 총장은 학생을 징계처분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 대상 학생과 그 학생이 속한 학부(과)장에게 처분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징계처분의 재심사 요구) ① 총장은 제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의결 결과가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제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학생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제9조에 의거하여 징계감경, 유지 또는 취소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④ 재심의 의결이 완료되면 제10조 제1항의 1호 및 2호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제의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재심의 결과에 따른 처분은 제10조 제2항 및 3항에 의한다.

제12조 (무기정학의 해제) ① 학생처장은 무기정학 중인 학생의 정학 해제를 위하여 학부(과)장이 정학 해제를 요청할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정학 해제를 제의하고, 총장이 정학을 해제한다.

② 학부(과)장은 제1항에 따라 무기정학 해제를 요청할 경우 정학 해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무기정학의 해제 요구는 처분일 30일 이후에 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 누설의 금지) ① 징계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 회의

2.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사람의 명단

3. 징계위원회 회의록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징계의 기록) 총장은 학생을 징계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대장과 해당 학생의 학적부에 기록한다.

제15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학생징계의결요구서

인 적 사 항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학년		학번	
	주 소					
징 계 사 유						
징계 기준 대한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동서울대학교 학생처장 직인 동서울대학교 학생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학년		학번	
	주 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장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한다.					
동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서울대학교 학생징계위원회위원장 직인 귀 하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학년		학번	
	주 소					
본인은 동서울대학교 학생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동서울대학교 학생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학 생 징 계 의 결 서

징계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학년		성명	
	주 소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학생징계위원회위원장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학생 징계처분 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학년		학번	
처분내용					
이유	별첨 학생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서울대학교 총장 직인 ○○○ 귀 하					

【별지 제5호 서식】

학생 징계 대장

연번	소속	학번	성명	징계 처분일자	징계 처분내용	징계처분사유	징계 처분권자	비고